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35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조인철・이개호・문진석

주철현 • 이해민 • 박용갑

위성곤 • 한정애 • 이건태

이훈기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.

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,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 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(안 제121조의2,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).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의2제1항에 제2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10.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(이하 "도심융합특구"라 한다)에 입주하는 외국 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
- 제121조의17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8호 및 제9호"를 각각 "제8호·제9호 및 제11호"로 한다.
  - 11.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
- 제121조의19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13.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
  - 14.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도심융합특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 21조의2제1항제2호의10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조세 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.

제3조(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21조의17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1조의2(외국인투자에 대한	제121조의2(외국인투자에 대한
조세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	조세 감면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	
하기 위한 외국인투자(「외국	
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	
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	
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로서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	
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	
는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1	
2항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, 취	
득세 및 재산세(「지방세법」	
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	
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각각 감	
면한다.	
1. ~ 2의9. (생 략)	1. ~ 2의9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2의10.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
	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
	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
	(이하 "도심융합특구"라 한
	다)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
	업이 경영하는 사업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#### ② ~ ⑱ (생 략)

제121조의17(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 세 등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(이하 이 장에서 "감면대상사업"이라 한다)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,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.

1. ~ 10. (생 략) <신 설>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

② ~ ⑱ (현행과 같음)
제121조의17(기업도시개발구역
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
세 등의 감면) ①
•
1. ~ 10. (현행과 같음)
1. ~ 10. (현행과 같음)
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
<ol> <li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11.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</li> <li>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</li> </ol>
<ol> <li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11.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</li> </ol>
<ol> <li>~ 10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11.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</li> <li>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</li> <li>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</li> <li>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</li> </ol>
1. ~ 10. (현행과 같음)  11.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 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 에서 하는 사업
1. ~ 10. (현행과 같음)  11.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 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 에서 하는 사업
1. ~ 10. (현행과 같음)  11.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 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 에서 하는 사업
1. ~ 10. (현행과 같음)  11.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 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 에서 하는 사업
1. ~ 10. (현행과 같음)  11.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 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 에서 하는 사업
1. ~ 10. (현행과 같음)  11.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 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 에서 하는 사업

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)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•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 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, 제1항제2 호 · 제4호 · 제6호 · 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 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•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 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, 제1항제2 호 · 제4호 · 제6호 · 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 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.

#### ③ ~ ⑩ (생 략)

제121조의19(감면세액의 추징 등) 저

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
<u>মী৪ই •</u>
제9호 및 제11호
<u>利8</u>
<u>호·제9호 및 제11호</u>
<u>.</u>
③ ~ ⑩ (현행과 같음)
∥121조의19(감면세액의 추징 등)
①

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 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 한다.

1. ~ 12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\_\_\_\_\_

--.

- 1. ~ 12. (현행과 같음)
- 13.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지정이 해제된 경우
- 14.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
- ② (현행과 같음)